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8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한정애

정태호 • 추미애 • 송옥주

조계원 · 김준혁 · 허성무

전종덕 • 서미화 • 김현정

이원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 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 의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	
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	
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
	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

 는 내용의 정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